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성명서]

교과부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는 시대착오적 권한남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칙 제·개정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운영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상태이며,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된다. 특히, 교과부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조항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시행령에는 학교규칙의 절차와 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며,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학교규칙을 제정하면 될 뿐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포하여 발효된 조례이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는 공표를 받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교과부가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야말로 교육자치의 정신에 반하며,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국제인권법을 구체화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벗어나, 학생, 교사, 학교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서의 학생들

의 자치권, 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규칙은 “학생들만 지키는 것”,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와 타율적인 규칙”을 넘어서, “교사, 학생 모두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체 생활 협약”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가 각급학교에 배포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은 “서로를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규제대상으로서의 학생의 의무만 담고 있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절차, 학생들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전락시켜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자치권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는 시대착오적 권한남용이다.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교육 주무부처로서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2. 5.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